

“표준하도급계약서 변경 금지해야”

건정연 “임의규율에 그쳐 특약추가 등 잦아”

2014년 01월 27일 (월)

전상곤 ✉ jsg@kosca.or.kr



◇노재화 원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최근 발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변경 사용을 금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자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장

하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정 또는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 같은 결과는 하도급법령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임의적 규율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 자체 자료상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은 60.2%에 불과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하는 경우는 수정 또는 변형을 통해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58.5%, 일부 조항을 변형하는 경우가 14.8%였으며, 원사업자가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은 18.5%, 구두계약 또는 계약서 미교부 비율은 8.1%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당특약 금지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 내용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감경받을 수 있는 별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상곤 기자